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</b> <b>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	배포 일시	2018. 1. 17(수) 총 4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고용석, 서기관 오진수, 주무관 전미자 • ☎ (044) 201-3587, 3588	
보 도 일 시		2017년 1월 1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17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 소규모 시설물 전문가 안전관리·사회기반시설 성능 종합 평가 시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’17. 1. 17. 개정)」이 1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하 「재난법」)와 국토부(「시특법」)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,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\*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  - \* 정부합동 안전혁신 종합계획 발표(’15. 3. 31,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)
  - 「재난법」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「시특법」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하여 기존 중·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,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\*를 하게 된다.
    - \* 1·2종 시설물(8만 개소) + 3종 시설물(17만 개소) ⇨ 시특법 대상 시설(25만 개소)
  -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, 시설물 균열 심화·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·철거·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·보강을 의무화한다.
- 또한, 1970~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(SOC)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,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

※ '17년 6월 기준, 「시특법」상 시설물(83,960개, 1,2종 기준)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,791개소(4.5%)이며, 10년 후에는 16,886개소로 20.1%로 예상

-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하여, 보수·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□ 국토부는 지난해 「시특법」이 전부 개정된 이후, 하위법령 개정, 3종 시설물 인수,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.

○ 또한,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로이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(055-771-1999)을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,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,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

○ “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.”라고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 안전과과 오진수 서기관(☎ 044-201-358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 (제명 변경) 법률 제명을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변경함
- ② (시설물 종류) 시설물 종류·규모·구조 등에 따라 1~3종으로 구분
  - (1종시설물) 재난위험이 높거나 구조상 안전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  - (2종시설물)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제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  - (3종시설물) 1,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의 우려가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정·고시한 시설물
- ③ (3종시설물 지정)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재난발생 우려가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
- ④ (시설물 등록) 1,2종시설물은 사업주체가 준공 전에, 3종시설물은 지정이후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, 관리주체에게 관련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
- ⑤ (안전점검 실시)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,
  - 3종시설물 중 「공동주택관리법」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, 「건축법」상 노유자시설 등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민간관리주체의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「재난법」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함
- ⑥ (긴급안전조치) 시설물 기초의 균열심화,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·사용금지·철거·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

⑦ (불법 하도급 사실조사)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\* 위반이 의심될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

- 조사실시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
\*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나, 비파괴재하시험, 수중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도급 금액의 50%이하,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이 가능

⑧ (성능평가 실시) 도로, 철도, 항만, 댐 등 SOC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

-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

⑨ (지원센터 설치·운영)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·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

⑩ (실태점검) 국토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·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,

- 시장군수·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계획 이행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

⑪ (시정명령 이행 강화) 불성실한 안전점검·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

※ (현행)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,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(제9조의4)